

시 험 관 리 지 칙

제4차 개정 2020.12.30.

1. **목적** : 이 지침은 학칙 및 수업관리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시험 관리의 공정성과 학습평가의 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.
2. **시험의 구분** : 매 학기 전 교과목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중간시험과 기말시험, 수시 시험으로 구분한다.
3. **실시시기** : 매 학기의 중간시험 및 기말시험은 학사력에 정한 소정기간에 따라 실시한다. 교과목 담당교수는 필요에 따라 정기시험 외에 수시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.
4. **실시방법** : 시험은 정한 기간 중 모든 교과목에 대해 담당교수가 해당 수업시간에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교양 및 교직과목 중 수강인원(100명이상) 과다로 자체평가가 힘든 경우 요청한 과목에 한하여 별도 시험시간표에 의거 실시한다.
5. **시험시간표 작성 및 공고** : 정기시험의 시간표는 강의시간표에 준하여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험개시 1주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
6. **시험지 관리**
 - 가. 삭제(개정 2017. 06. 21)
 - 나. 시험시간표에 의거 실시되는 교양·교직과목 및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교과목 담당교수는 직접 인쇄실에 인쇄를 의뢰하고 인쇄된 시험 문제지를 봉인하여 보관한다.(개정 2017. 06. 21)
 - 다. 시험 종료 후 시험문제지 견본과 답안지는 5년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.(개정 2017. 06. 21)
7. **시험감독**
 - 가. 시험 감독은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가 감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해당 교과목 교수가 감독하지 못할 경우에 다른 교수로 배치할 수 있다.
 - 나. 시험 감독은 1실 당 2인을 기준으로 교수 1명(시험감독 책임자), 조교 1명으로 편성한다. 단, 전공시험 감독은 교수 1명으로 편성할 수 있다.
 - 다. 시험시간표에 의거해 실시하는 교양 및 교직과목의 시험 감독은 수강인원수를 파악하여 단과대학별로 균형 있게 분반하고, 해당교과목 담당교수는 해당 각 분반의 책임 감독관이 되며, 각 분반은 1~2인의 조교로 배정한다.
 - 라. 시험 감독으로 배정 된 교원 및 조교에게 소정의 감독료를 지급 할 수 있다.(단, 분반 요청 한 담당교수는 제외함)
8. **시험 진행 및 확인**
 - 가. (삭제 2020.12.30.)

- 나. 시험감독 책임자는 수험생의 본인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시험 문제지에 날인한다.
- 다. 시험실시 인원 및 사고인원을 파악하여 봉투 전면에 기재한다.
- 라. 부정행위자 적발 시 시험지에 표시하고 봉투 전면에 기재한다.

마. (삭제 2020.12.30.)

바. (삭제 2020.12.30.)

9. 부정행위자 처리

- 가. 시험감독 교원은 부정행위자 적발 시 수험생의 시험지를 회수하고 퇴실 조치하며 그 내용을 시험 상단에 표시하고 봉투 전면에 기재한다.
- 나. 부정행위자는 학기 중 출석, 중간시험, 수시시험 성적 등과 관계없이 F학점으로 처리한다.

10. 시험감독 불참자 처리 : 시험 감독으로 지정된 교원이 시험 감독 일에 사전 통보 없이 불참 하였을 경우에는 사유서를 작성하여 단과대학을 경유 교육연구처로 제출하며,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인사관리에 반영한다.(개정 2019.03.27)

부 칙(학사관리부-633호, 2017. 06. 21)

이 지침은 2017년 06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학사운영팀-238호, 2019.03.27)

이 지침은 2019년 03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학사지원팀-1198호, 2020.12.30)

이 지침은 202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.